

공개토론회자료

본 자료는 2008. 6. 26(목) 夕刊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사회복지·육아 -

---

2008. 6. 26(목) 10:00 ~ 12:00

###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회복지·육아 분야 작업반

동 자료는 '08~'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회복지·육아 분야 작업반에서 준  
비한 자료로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프 로 그 램

---

09:30 ~ 10:00 **등록 및 네트워킹**

10:00 ~ 12:00 **아동 보육지원 개선방안**

사 회 : 이일주 (공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발 표 : 김정호 (KDI 재정성과평가실 연구위원)

토 론 : 권오봉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김현숙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문희 (육아정책개발센터 정책연구팀 연구위원)

조부경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목 차

## 토론주제 : 아동 보육지원 개선방안

1. 서론 .....	1
2. 육아정책 논의의 틀 .....	5
3. 육아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정책이슈 .....	9
가. 육아서비스 산업 현황 .....	9
나. 육아서비스 산업의 정책이슈 .....	13
4. 육아지원정책 현황 및 문제점 .....	15
가. 육아지원규모 .....	15
나. 육아지원 문제점 .....	19
5. 육아서비스부문 선진화 방안 .....	23
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확립 .....	23
6. 육아지원정책 개선방향 .....	24
가. 육아지원 목표와 기대효과의 구분 .....	24
나. 육아지원 대상 및 범위 .....	26
다. 육아지원체계 효율성 제고 .....	28
7. 요약 및 결론 .....	32
참고문헌 .....	35

**토론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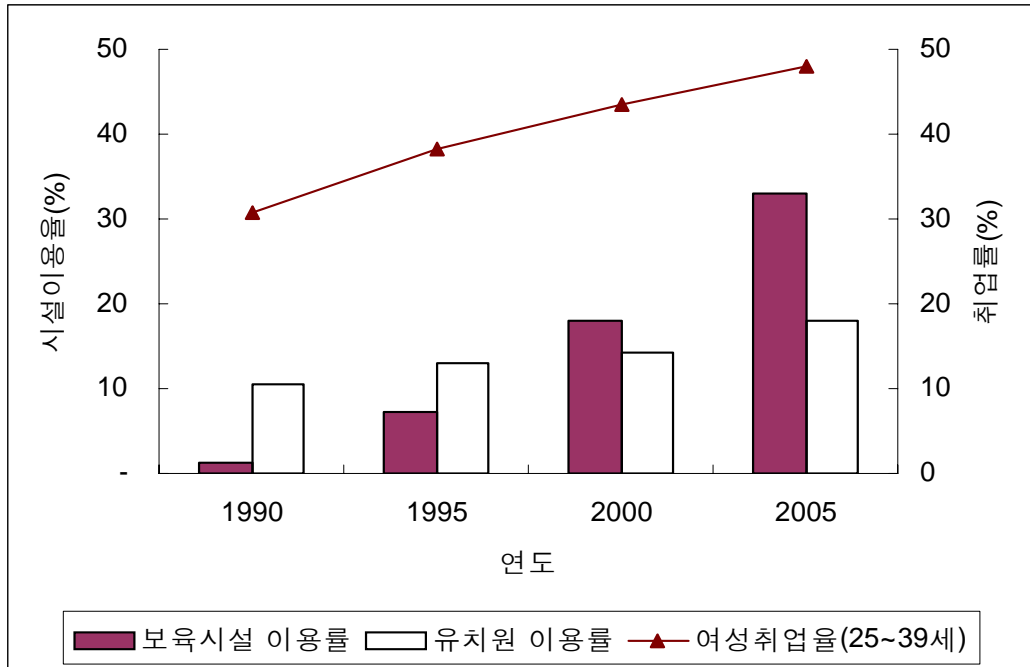
**아동 보육지원 개선방향**



## 1. 서 론

- 1990년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급증하고, 보육 및 교육기관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0~5세) 육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 (<그림 1> 참조).
-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5세에서 39세 사이의 여성 취업률이 1990년에는 31%에서 2005년에는 48%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영유아 중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중은 1990년의 11%에서 2005년의 18%로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1990년의 1%에서 2005년의 33%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여, 2005년에는 영유아 중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이 51%에 이르렀음.
- 반일제 이상 학원 등 육아기능을 하는 사설기관까지 포함하면, 2007년 현재 70% 이상의 영유아가 육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조병구 외, 2007)

<그림 1> 여성 취업률과 영유아 육아시설 이용률 변화



자료: 인구총조사, 보육통계, 교육통계연보

- 영유아의 육아서비스 지원은 가정의 보육을 대체함으로써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필수적이며, 교육적인 면을 보완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와 차세대 인적자본 개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 일반적으로 가정 내에서 육아부담이 여성에게 더 많이 부과되므로, 육아서비스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및 지속적 노동공급과 밀접한 연관을 가짐.
- 영유아기 보육 및 교육은 아동의 인지적 및 비인지적 능력개발에 영향을 미쳐 장래의 인적자본 형성과 직결되는 중요 요소임 (Heckman, 2000 등 참조).
- 인구고령화 시기 여성의 인력활용 측면이나 차세대 인력의 질을 고려할 때, 육아서비스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됨.

-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영유아 육아관련 예산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관련제도도 정립되는 과정에 있으나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및 정책목표 정립, 적합한 정책수단 사용 등 개선의 여지가 많음
  -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지원 예산만도 지난 5년간 연평균 38% 증가하여 2008년도 예산이 1조 4,178억 원에 이르렀고, 지방비를 포함할 경우 3조원에 육박함.
  - 영유아 육아비용 지원 뿐 아니라 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평가인증,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제도 등 관련 제도가 정립되는 과정
  - 육아지원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영유아 보육 · 교육에서의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이 명확히 정립되지 못함에 따라 정책수단과 정책목표와 괴리되어 있는 경우가 존재함.

〈표 1〉 주요 부처 영유아 보육지원 예산

(단위: 억원)

부처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 증가율(%)
보건복지 가족부	국비	4,050	6,644	7,843	10,435	14,178	37.8
	국비+지방비	8,752	16,014	20,354	22,918	29,990	38.4
교육과학부	국비	513	1,037	1,997	2,143	-	67.3
	국비+지방비	4,564	6,549	8,860	9,942	-	30.3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 교육과학부 내부자료, 국가재정운용계획(2006~2010)

- 영유아 육아서비스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양질의 육아서비스의 공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육아서비스 이용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이 정책과제임.

- 육아서비스 산업을 선진화하여 양질의 서비스가 원활하게 생산되고 그 정보가 유통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확립할 필요
  - 육아서비스 이용 기회가 모든 가구에 균등하게 제공되는 지원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기존의 보육 및 교육료 지원과 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여 수요자의 필요에 맞는 지원체계의 정비가 필요함.
  - 위의 두 과제는 상호 보완적이므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
- 본고는 육아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균등한 육아서비스 기회 제공을 위한 각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역할 및 지원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2. 육아정책 논의의 틀

- 최근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지원 정책에 대한 논의는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한 모성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육아지원의 수혜자인 아동을 위한 정책방향이 간과되는 경향을 보임
  - 여성의 사회진출시 가정에서의 양육시간을 대체하는 서비스를 시장에서 구입한다는 관점에서, 육아비용에 대한 지원은 모성의 실질임금을 높이는 정책으로 인식되어옴.
  - 최근, 육아서비스가 여성의 사회진출과 별개로 아동의 발달에 직결되는 교육과정으로 인식됨에 따라 육아지원정책의 목표 및 방향 역시 아동발달 측면이 부각됨.
- 어린아이의 성장단계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영아(嬰兒)와 유아(幼兒)의 구분이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통계자료 이용의 편의상 법적 정의에 따라 만 0~2세 아동을 영아로 만 3~5세 아동을 유아로 구분하여 논의함
  - 어린아이의 성장단계는 일반적으로 심신 발육상의 특징에 따라 신생아기(新生兒期), 유아기(乳兒期), 유아기(幼兒期)로 나누어지나, 연속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음.<sup>1)</sup>
  - 영아와 유아의 구분은 아이가 걷기 시작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만 1세 전후가 되기도 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기준으로 만 3세 전후가 되기도 하는 등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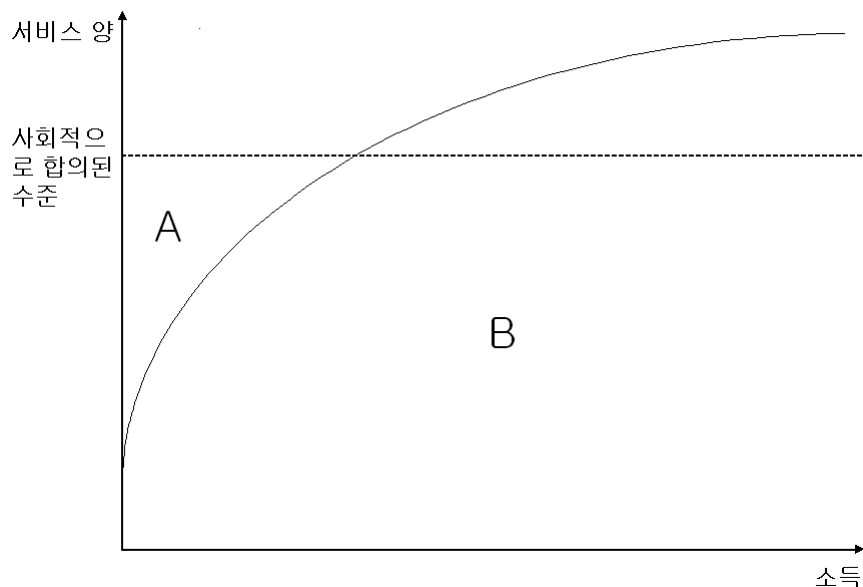
1) 대개 생후 1~2주까지, 또는 배꼽이 떨어지는 시기까지를 신생아기(新生兒期)라고 하고, 신생아 이후 만 1세까지를 유아기(乳兒期)라고 하며, 만 1세부터 만 6세까지를 유아기(幼兒期)로 분류함.

- 영유아기 아동은 각 발달 단계별로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발달을 위해 안정적인 보살핌과 적절한 자극을 필요로 함.
- 영유아기 아동은 보육(保育, Childcare)과 교육(教育, Education)을 필요로 하나 두 서비스가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개념이 아니므로 본고에서는 육아(育兒)를 영유아기의 보육 및 교육서비스(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
  - 보육서비스는 어린아이를 돌보아 기쁨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에는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로 정의되어있고, 교육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지식이나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주는 서비스를 말함.
  -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은 모두 어린아이의 발달을 위한 보살핌과 자극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 두 개념의 구분이 아동의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한하지는 않음.
  - 최근의 정책논의에서 보육 및 교육의 구분은 서비스 내용보다는 시설유형을 분류하기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향
-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 개별 가구가 원하는 육아서비스의 양과 질은 다르나, 정책의 측면에서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아동이 누려야 할 서비스의 수준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지원대상과 범위를 선정할 필요
  - 사회구성원으로서 아동이 어떠한 수준의 육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학제간 체계적인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함
    - 정책을 통해 보장해야 하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수준’의 육아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동발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정할

필요(<그림 2 참조>)

- 예를 들면, 대부분의 OECD 국가에 유치원 등의 기관에서 3세 이상의 유아에 대한 취학전 프로그램(Pre-school program)을 제공하고 있고,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의 경우 취학전 프로그램이 초등교육의 일부로 편제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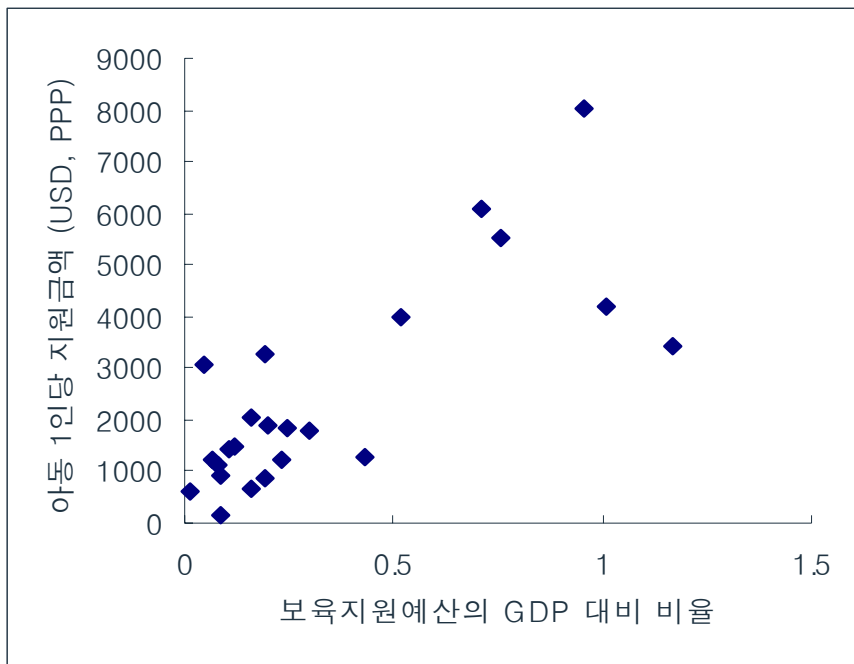
<그림 2> 육아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정책



- 지원 대상에 있어서는 정부가 모든 아동의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지원하는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의 국가와 취약층 중심으로 지원하는 영국, 미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방향이 존재함.
- <그림 2>에서 최소한의 수준이 합의된 후 보편적 지원(A+B)을 할지 차등적 지원(A)을 할지가 두 번째 쟁점임.
- 육아지원의 보편성을 추구할수록 조세부담이 늘어나므로 영유아 육아지원의 범위의 논의는 아동발달의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와 국민의 조세저항을 바탕으로 접근해야함 (<그림3> 참조).

<그림 3> 영아보육 지원수준과 조세부담 (OECD 국가, 2003)



자료: OECD (2007),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980-2003.

### 3. 육아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정책이슈

#### 가. 육아서비스 산업 현황

- 육아서비스 산업의 주체는 수요자, 공급자 그리고 이들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정책당국으로 나누어지고, 이 중 서비스 공급시설은 현재 보육시설, 유치원, 기타육아시설로 구분할 수 있음 (<표 2> 참조).
- 보육시설은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 정부의 인건비 보조를 받는 시설(국공립/법인/법인 외)과 민간시설(정원 21명 이상은 민간개인, 정원 20명 이하는 가정시설) 등으로 구성
- 유치원은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 설립주체 및 정부 보조 여부에 따라 국공립/사립 유치원으로 구분됨.
- 다양한 학원 중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을 '기타 육아시설'로 구분하며 대표적으로 미술학원 등 반일제 이상 학원과 소위 '영어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영어학원 유치부 등이 포함됨.

〈표 2〉 육아서비스 시설 유형

	영유아 보육시설(0~5세)	유아 유치원(3~5세)	기타육아시설
시설 종류	인건비지원시설 (국공립/법인/법인 외), 민간 개인, 가정(놀이방) 등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미술, 태권도 등), 영어학원 유치부' 등
주무 부처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주요 규제	가격상한제, 전일제 의무	영아보육 불가, 전일제 선택	-
질적 수준 감독	시설 인가제, 평가인증	시설 인가제	시설 등록제
영리 여부	비영리	비영리	영리
적용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원법 <sup>2)</sup>

□ 육아서비스의 대상은 연령별 영유아이며, 수요자는 영유아를 둔 가  
구임.

- 0~2세의 영아는 보육시설과 기타육아시설을, 3~5세의 유아는 유  
치원과 기타육아시설을 이용하며, 이 외에도 혈연 및 비혈연 개  
인양육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함.
- 일반적으로 보육시설이나 기타육아시설의 경우 돌볼 사람이 없  
어서이거나 혹은 사회성 향상과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반면, 유치원 경우 사회성 향상, 전인적 발달, 진학 준  
비가 대부분임(서문희, 2005).
- 모성의 사회진출 증가 및 영유아기 발달의 중요성 강조로 육아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수와 이용 아동수는 1990년도 이  
후 급속한 양적 팽창을 해왔으며 주로 보육시설의 팽창이 주도(보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줄여 학원법이라 칭함.

육시설은 15배, 이용 아동수는 20배 이상 증가. <표 3>참조).

-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보육시설이 제도권에 포함되어 보육사업 활성화방안의 대상이 됨에 따라 양적으로 팽창
- 특히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1995-1997),’ 1998년 시설 인가제에서 신고제로의 전환, 시설종사자 자격제도 미흡 등으로 인해 보육시설의 수가 급증함.
- 2005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보육시설 설립방식이 인가제로 다시 전환되고, 시설종사자 자격제도 등이 갖추어지게 되었으나 2006년부터 시행된 기본보조금으로 인해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표 3> 연도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시설수와 이용 아동수

(단위: 개소, 명)

연도	보육시설수	보육시설 아동수	유치원수	유치원 아동수
1990	1,919	48,000	8,354	414,532
1991	3,690	89,441	8,421	425,535
1992	4,513	123,297	8,498	450,882
1993	5,490	153,270	8,515	469,380
1994	6,975	219,308	8,910	510,100
1995	9,085	293,747	8,960	529,265
1996	12,098	403,001	8,939	551,770
1997	15,375	520,959	9,005	568,096
1998	17,605	556,957	8,973	533,912
1999	18,768	640,915	8,790	534,166
2000	19,276	686,000	8,494	545,263
2001	20,097	734,192	8,407	545,142
2002	22,147	800,991	8,343	550,256
2003	24,142	858,345	8,292	546,531
2004	26,903	930,252	8,246	541,713
2005	28,367	989,390	8,275	541,603
2006	29,233	1,040,361	8,290	545,812

주: 만6세 이상 아동 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포함

자료: 보육통계, 교육통계연보

□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 영유아 비율은 1990년 11.7%에서 2006년 51.0%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기타육아시설까지 포함한 경우 대부분의 유아가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기준으로 영아의 이용률이 26%, 유아의 이용률이 73%이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이용률 증가(<표 4> 참조)
-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에 의하면 기타육아시설의 경우 영아의 이용률은 4%, 유아의 이용률은 18%에 달함.
- 「2007년 KDI 가구실태조사」에 의하면 보육시설, 유치원, 기타육아시설을 포함한 모든 육아서비스시설 이용률이 영아의 경우 48%, 유아의 경우 96%에 이르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 2006년도 영유아 육아지원시설 이용률

(단위: 명, %)

연령	전체 아동수	육아지원시설 이용 아동		시설이용률
		보육시설	유치원	
0	442,831	46,351		10
1	450,503	102,473		23
2	477,116	201,111		42
3	491,176	221,529	77,669	61
4	528,586	219,974	170,652	74
5	590,020	198,631	292,870	83
영아소계 (0~2세)	1,370,450	349,935		26
유아소계 (3~5세)	1,609,782	640,134	541,191	73
총계	2,980,232	990,069	541,191	51

자료: 2007년도 보육통계 (2006년도 실적치, 여성가족부), 2007년도 교육통계연보 (2006년도 실적치, 교육인적자원부)

## 나. 육아서비스 산업의 정책이슈

- 현 계획상 정부는 보편적(universal) 공보육체계를 이상(理想)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낮은 소득세율과 민간보육 및 교육기관이 발달한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하지 않음.
  - 『새로마지플랜 2010』과 『새싹플랜』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를 기본계획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공적 육아서비스의 수가 적다는 것 이상의 필요성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마땅치 않음.
    -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해 운영하는 공적 육아서비스로는 국공립 보육시설 및 유치원, 법인 및 법인 외 보육시설로 시설 수는 전체의 23%, 시설 이용 아동으로는 26%를 차지(<표 5>참조)
    - 국공립 보육 및 교육시설의 수보다는 기능측면에서의 보완이 시급한 과제임.
  - 소득세율이 낮고, 보육의 민간시장이 발달해 있는 우리나라 현실 하에서는 정부가 공보육시설 확충,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의 국가책임 등 전통적 복지국가식의 지원체계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표 5〉 2006년도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일반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분	계	보육시설							유치원	
		국·공 립	법인	법인 외	민간 개인	부모 협동	가정	직장	국공 립	사립
시설 수 (비율)	37,523 (100.0)	1,643 (4.4)	1,475 (3.9)	1,066 (2.8)	12,864 (34.3)	59 (0.2)	11,828 (31.5)	298 (0.8)	4,460 (11.9)	3,830 (10.2)
아동 수 (비율)	1,586,173 (100.0)	114,657 (7.2)	120,551 (7.6)	58,808 (3.7)	582,329 (36.7)	1,238 (0.1)	148,240 (9.3)	14,538 (0.9)	121,324 (7.6)	424,488 (26.8)

자료: 보육통계 및 교육통계연보 이용 저자계산

□ 육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수단으로써 기본보조금과 같은 정책수단을 사용함에 따라 경쟁에 의한 자발적 질 향상이 어려움.

- 경쟁축진을 통해 질적 향상을 위한 서비스 공급자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시설의 체질 개선을 조건으로 기본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 보조금이 시설의 영업이익 보전수단으로 인식됨.

- 가격상한을 준수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지키며, 교사에게 4대 보험을 지급하는 등의 보조금수령 조건을 만족시키더라도 평균적으로 보조금의 약 절반만이 비용으로 소요됨(조병구 외,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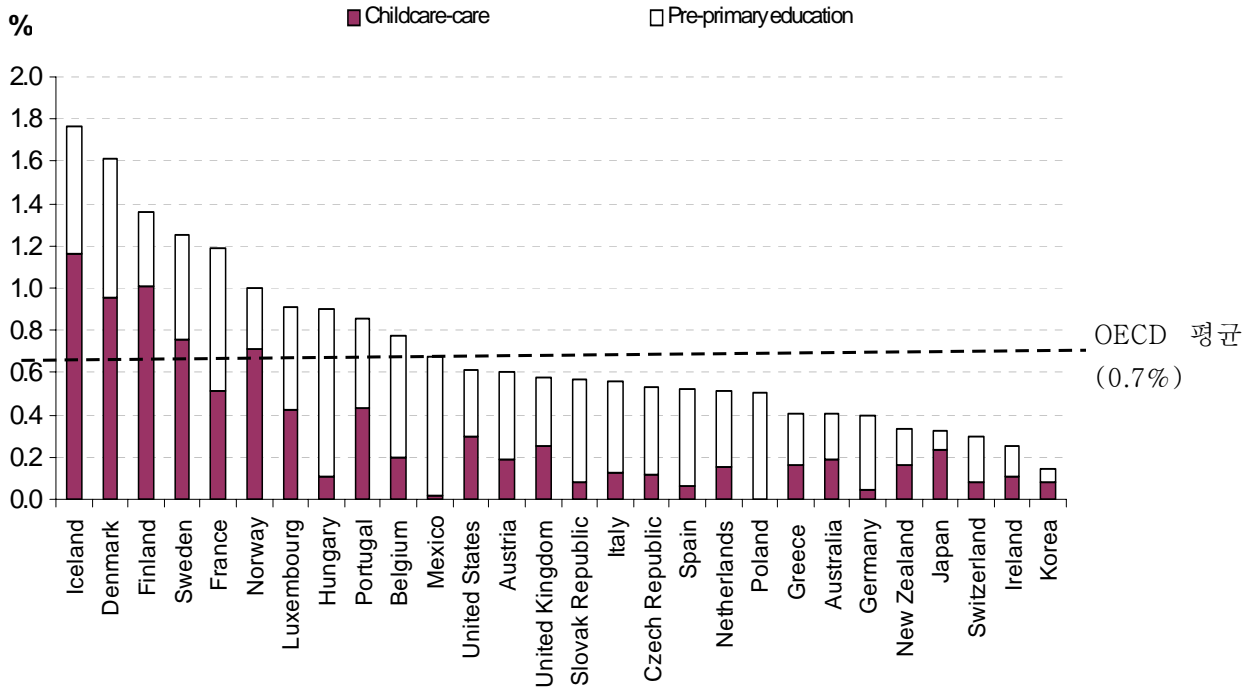
-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동 대 교사비율, 환경 및 운영상황, 보육 및 교육 과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되, 각 시설별 자율성을 부여하여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유도

## 4. 육아지원정책 현황 및 문제점

### 가. 육아지원규모

-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지원을 위한 정부지출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이는 절대적인 지원수준의 차이와 상대적인 민간기관의 발달을 반영함.
- 2003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부문지출은 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0.7%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0.14%를 기록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정부지출을 하고 있는 아이슬란드, 덴마크의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않음(<그림 4> 참조).
- GDP 대비 정부지출의 국가간 차이는 유아보다는 영아의 경우 더 큰 경향을 보이고, 영유아 육아서비스의 지원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인가, 아니면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보충적 지원인가에 따라 더욱 달라짐.

〈그림 4〉 영유아 보육과 교육 서비스 부문의 정부지출 (GDP 대비 비율, 2003)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 영유아 보육 및 교육지원 부문 정부예산은 최근 급속히 팽창하여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이 2002년도의 0.11%에서 2007년도의 0.37%로 증가하였으나, 아직까지 2003년도 OECD 국가의 평균 수준(0.7%)에는 근접하지 못하는 실정임(<표 6> 참조).

〈표 6〉 국내총생산 대비 영유아 보육과 교육 지원 정부 예산 비율  
(단위: %)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GDP 대비 육아지원 정부예산	0.11	0.14	0.17	0.28	0.35	0.37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국가재정운용계획(2006~2010)

- 영유아의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예산은 중기적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난 2006년도에 수립된 중장기계획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르면 육아지원을 포함한 저출산분야의 예산은 2006년도의 2.1조원에서 2010년도의 5.0 조원으로 계획되어 있음.
  - 정부부처의 2008년도 영유아 육아지원예산은 1조 4,263억 원에 이르고, 전년도 대비 6.7%의 증가율을 보임.<sup>3)</sup>
    - 2008년도 보육지원 부문 예산은 전년도 대비 35.9%의 증가율을 보여 지난 5년간의 증가추세를 이어간 반면, 교육과학부의 유아교육지원 부문의 예산은 2008년도부터 지방교육재정으로 편입되어 정확한 비교가 어려움.
  - 보건복지가족부의 사업별 예산으로는 차등보육료 및 만 5세아 무상보육 등 보육료 지원사업이 보육지원부문 전체의 57%를, 국공립시설 인건비 지원과 기본보조금 등의 시설운영지원이 38%를 구성
  - 교육과학부의 지원방식은 유아교육지원예산의 85%를 구성하는 유아학비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3)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교육예산이 2008년도부터 지방교육재정으로 편입되어 <표7>의 경우 전체 국고지원예산에서 제외되어 있다.

〈표 7〉 보육 및 교육지원 예산의 현황

(억원, %)

구 분	'07예산	'08예산	증감	증감율	비 고
계	13,367	14,263	896	6.7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 예산은 '08년부터 지방이양
<b>보건복지가족부</b>	<b>10,435</b>	<b>14,178</b>	<b>3,743</b>	<b>35.9</b>	
보육시설 운영지원	3,799	5,441	1,642	43.2	종사자 인건비 (영아80%, 유아30%) 영유아기본보조금 (유아농어촌사업)
유아기본보조금시범사업	29	100	71	244.8	3개지역 → 16개 지역 확대
영유아보육료 지원	5,936	8,079	2,143	36.1	지원아동 772 → 836천명
보육시설 기능보강	417	240	△177	△42.4	국공립 신축 349→88개소
보육인프라 구축	42	54	12	28.6	중앙·지방보육정보센터 운영 등
보육시설평가인증	74	120	46	62.2	인증운영비 및 지원금 (1인당 50만원)
교재 및 차량운영비	138	144	6	4.3	교재비 22천개소, 차량비 3.5천개소
<b>교육과학기술부</b>	<b>2,208</b>	<b>2</b>	<b>순감</b>	<b>순감</b>	<b>'08년부터 지방이양</b>
유아교육 지원	2,143	2			
장애아 무상교육	37	-			
농산어촌 교육지원(농특)	28	-			
<b>농수산식품부(농특)</b>	<b>507</b>	<b>412</b>	<b>△95</b>	<b>△18.7</b>	
영유아양육비 지원	268	250	△18	△6.7	5ha이하 아동 (29천명), 보육료의 70%
취약농가 인력지원 (시설미이용아동양육비지원)	240	162	△78	△32.5	25천명, 보육료단가의 35%
<b>노동부</b>	<b>217</b>	<b>223</b>	<b>6</b>	<b>2.8</b>	
직장보육시설 지원 (고용보험기금)	165	171	6	3.6	보육교사 임금지원 보육시설 운영·설치지원
공공보육시설운영 (근로자복지진흥기금)	52	52	-	-	보육시설 운영지원

주: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교육지원예산은 2008년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됨.  
자료: 기획재정부

## 나. 육아지원 문제점

- 2006년 영아를 대상으로 도입된 기본보조금 지원사업은 정책목표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미흡한 제도설계와 그로 인한 낮은 효과성 및 효율성을 나타내었으며, 부처간 의견 조율의 한계를 드러내는 등의 문제점을 보였음(조병구·조운영 외, 2007).
  - 기본보조금 사업은 민간보육시설 질 향상, 부모의 보육료 부담 완화, 영아보육 활성화,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 등을 한꺼번에 목표로 설정하였는데, 각 정책목표의 필요성, 정부 역할로서의 적절성, 우선순위 등에 대한 고려는 부족함.
    - 예를 들면, 영아의 시설이용률이 낮은 것을 인식하여 영아보육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포함시켰으나, 가정에서 보육할 수 있는 영아에 대해 시설이용을 장려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으며 현재는 이들에 대한 재정낭비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제도 설계에 있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함.
    - 국공립시설에 비해 낮은 민간보육시설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하여, 자율경쟁에 의한 질 향상이라는 시장원리를 훼손하였음.
    - 부모의 보육료 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을 위해, 보육비용을 억제하나 서비스 질 하락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가격상한을 유지한 채 보조금을 도입하였음.
    - 모의 근로여부, 자녀 수, 지역 등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 역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육아비용, 시설유형, 노동공급 등 수요자의 선택에 직결되는 수요자보조금을 시설에 지급함으로써 정책의 인지도를 낮추고, 시설의 보조금 의존도를 강화하였음.
- 기본보조금 수혜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개선되고, 민간보육시설의 이용률이 증가하였으나 부모의 보육료 부담, 서비스 만족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등의 측면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공급자 측면에서 보조금 수령 선결조건(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교사의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교사에 최저보수 이상 급여 지급 등)으로 인해 보조금 수혜시설의 질이 개선되는 측면이 있음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교사임금 향상 등이 미미하여 지급된 보조금에 비해 평균적으로 절반 정도만이 선결조건을 충족하는데 쓰인 것으로 나타났음
  - 가격대비 서비스 질 향상으로 보조금 대상 시설인 민간보육시설의 이용률이 증가하였으나, 부모의 보육료 부담액,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서비스 만족도 등에서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 기본보조금 사업의 기획 및 시행에 있어 부처 간 의견 조율의 한계를 드러내었음.
  - 전일제를 원칙적으로 실시하는 보육시설과 이용시간을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유치원 간 이용 가격 및 투입비용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제도 실시 여부와 보조금 액수 등에서 조율에 어려움

을 겪은 바 있음.

- 기본보조금이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보육시설에만 우선 적용되어 유치원과의 문제는 불거지지 않았으나, 유아에 대한 어떠한 보조금 제도이든 여전히 여러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음 (예, 기본보조금 수령과 연계하려는 평가인증이 보육시설에만 적용됨).

- 또한 노동부에서 강조하는 근로여성 지원방안이 기본보조금에 반영되지 않았음.

○ 이와 같은 평가 결과 중 일부는 영아기본보조금 사업 자체에 한정된 문제일 수도 있으나, 정책목표의 부적절함 혹은 부처 간 미진한 의견조율 등은 육아지원 전반에 걸친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함.

□ 육아지원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등보육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대상 확대계획에 맞벌이 중산층에 대한 고려가 부재함.

○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의 측면에서, 같은 가구소득일 경우 맞벌이 가구의 육아비용이 훨씬 높은 것을 감안한다면, 차등보육료의 수혜대상을 넓히지 않더라도 보조율 인상 시 맞벌이 가구에 대한 차등지원 고려가 필요함.

□ 인건비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국공립시설은 민간시설과 비교할 때 이용자의 구성이나 그 역할이 차별화되어 있지 않음.

○ 국공립시설의 운영시 빈곤층, 장애인, 홀부모 등에 대해 입소 우선순위가 부여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잘 준수되지 않아 취약계층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

○ 국공립 시설이 수적으로 적은 것에만 초점을 두어, 적소에 국공

립 시설을 공급하는 것, 취약계층 아동의 육아를 위한 적극적인 기능,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개발 등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한계를 지님.

- 예를 들면 다문화가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에서는 이들의 문화적·언어적 불편함이 아동에게 대물림하지 않도록 국공립 육아서비스가 아동과 부모를 함께 지원하는 등 필요에 적합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어야 함.

## 5. 육아서비스부문 선진화 방안

### 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확립

- 시설의 비영리 규제에 대해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영리법인은 시장진입이 불가하도록 규제되고 있으나 사실상 영리시설은 학원의 형태로 육아서비스 시장 진입이 가능
  - 개인시설은 비영리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전제로 세제 및 부동산 구입 관련 혜택을 받기도 하나, 개인시설도 비영리로 보기는 어려움.
  -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네델란드, 영국, 미국 등의 국가에서 영리법인을 통해 육아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함으로써 영리추구를 위한 민간의 창의적인 노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함 (OECD 2006).
- 육아서비스 제공기관 간 자율적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시된 위의 방안은 정부는 공정한 서비스 제공의 규칙을 만드는 주체이고, 민간은 규칙에 따라 이윤을 극대화하는 주체라는 인식에 기반하므로 그에 합당한 일련의 제도개선을 수반해야 함.

## 6. 육아지원정책 개선방향

### 가. 육아지원 목표와 기대효과의 구분

- 영유아의 육아지원의 본질적인 목표는 아동발달의 균등한 기회 제공과 부모의 일·가정 양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부모의 부담 경감이나 출산율 제고는 육아지원으로 인한 기대효과로 이해할 수 있음.
- 1990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라 출산율제고가 중요한 정책목표로 부각되면서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지원은 출산장려정책의 수단으로 인식되어온 경향이 큼.
  - 사회적 최적 출산율이 어느 수준인지 산출하기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설사 산출한다 하더라도 출산율이 높아지면 육아지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출산율제고는 정책목표라기 보다는 육아지원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기대효과로 이해할 수 있음.<sup>4)</sup>
-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대한 제1차 기본계획(2006~2010년)인 '새로마지플랜 2010'은 보육·교육지원의 일차적인 목표를 자녀양육 부담 경감이라고 설정하고 있으나 '부담 경감'은 육아지원의 목표라기보다는 그로 인한 기대 효과에 해당함.
  - 어떠한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에 대한 지원은 가계 부담을 자동적으로 경감시켜주므로 '부모 부담 경감'은 육아지원의 목표가 아닌 기대효과임.

4) 육아지원사업의 정책목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조병구 외 (2007) 참조.

- <표 9>와 같이 동일한 재정사업의 목표가 절대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육아지원은 아동발달의 균등한 기회 제공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고, 또한 부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 수단이 될 수도 있음.
- 육아지원 시 아동발달의 균등한 기회제공을 위해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이 정당화되며,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같은 조건이라면 근로여성을 차등지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 육아지원의 시행부처는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분야 일자리 창출, 출산율제고 등의 육아지원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정책목표와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육아지원사업 목표의 단순화는 사업의 평가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향후 사업 방식, 체계에 대한 개선에도모하는데 기여함.

〈표 9〉 육아지원정책 구성의 예

	정책 1	정책 2
정책목표	· 아동발달의 균등한 기회제공	·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정책수단	·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 취약계층 양육 지원 (입양아, 장애아 등) · 아동수당제도 · 육아지원시설의 프로그램 및 인력 규제	·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 산전후휴가 급여 등 지원 확대 · 육아휴직 지원 강화 ·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 직장보육시설 지원
기대효과	·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 차세대 인적자본 개발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지원 · 출산율 제고 · 보육분야 일자리 창출	·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 아동 발달 지원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지원 · 출산율 제고 ·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개선

주: 정책수단의 예는 이론적 기대효과에 근거하므로 상대적인 구분임.

## 나. 육아지원 대상 및 범위

- 조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민간시장이 활성화 되어있는 현 상황에서 보편적 지원보다 취약계층 등 육아지원이 더욱 절실한 가구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판단됨.<sup>5)</sup>

5)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해 공보(교)육 체제를 선택할 것인가 민간 체제를 선택할 것인가의 논의는 의미가 없음. 공적 시설을 통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공적재원 투입을 통해 보육 및 교육에서의 공적 기능을 수행함. 정책논의의 쟁점은 지원수준과 지원대상의 범위에 있음.

- 취약계층 아동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여 주는 것과 더불어 부모의 양육방법에 대한 교육, 보육·교육 시설 및 보조금 혜택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추가적 노력이 필요함.
  - 취약계층은 빈곤계층, 장애인 가구, 저소득층(특히 맞벌이), 입양 아동 가구, 다문화 가구, 홀부모, 결손가정 등을 포괄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현재보다 강화되고 적극적일 필요가 있음.
  - 저소득층의 경우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인해 시설이용 부담액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용률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떨어지는데, 이는 낮은 인지도에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조병구 외 2007).
    - 기본보조금에 대한 인지 여부, 인근 국공립이나 민간 보육시설 존재 유무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소득 2~4분위에 비해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와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아동을 시설에 보내지 않는 취약계층의 경우, 양육방법에 대한 부모교육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시설 및 보조금 혜택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함.
    - 이러한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공립 보육시설이 담당해야 할 것임.
  - 또한 취약계층 아동의 국공립 보육시설 우선 입소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취약계층에 대한 입소순위가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잘 준수되지 않아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의 취약계층 이용비

율이 거의 비슷함.

- 따라서 국공립 시설 우선순위 준수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고, 입소 자격에 대해 일정 기간 이후 재평가하여 가정환경이 현저히 개선된 가구 혹은 일반가구는 취약가구에 이용권을 양보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다문화가구 밀집 지역에서는 국공립 육아서비스를 통해 이들 가구의 문화적·언어적 불편함이 극복되는 지원이 필요함.
- 취약계층이 적은 지역의 국공립시설은 긴급지원 기능 혹은 특별이 우선 지원 등 탄력적으로 운영되어 수요자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함.

## 다. 육아지원체계 효율성 제고

- 현재 육아지원방식은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이용 비용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관 이용률이 낮은 영아를 대상으로 차등적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표 10>에 볼 수 있듯이 아동의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을 포함한 기관 이용률은 2007년도 기준으로 0세아의 경우 14.8%에서 3세아는 81.2%, 5세아는 98.7%로 연령별로 큰 차이를 나타냄.
  - 이와 같은 현상은 부모가 연령이 낮은 아동일수록 양육에 있어 모성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기관 이용률이 낮은 영아의 경우 육아기관 미용자에 대한 아동수당지원이 아동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보육 · 교육비 지원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아동수당 역시 소득 계층별 차등적지원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영유아 보육 · 교육료 지원시 시설을 통한 육아서비스의 필수 수요자와 선택적 수요자에 대한 차등지원 필요
- 현행 육아지원방식은 영유아 보육 · 교육시설을 통한 비용지원 중심으로, 부모양육 대비 시설양육의 상대가격을 낮춤에 따라 시설에 대한 필요 이상의 과다수요 발생과 재정낭비 가능(영아의 시설이용률이 2004년과 2007년 사이에 급등, <표 10>)
  - 연령이 낮은 아동일수록 시설보다는 부모양육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인식되는데 시설 이용률이 낮은 영아의 경우에도 시설이용비에 대해서만 지원하므로 과다수요 발생가능성이 존재
  - 기본보조금으로 인해 모든 소득계층에 필요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체계를 시정하여, 취약계층 및 중산층 근로 여성 등 필수 수요자에 차등지원하는 방안 도입 (김현숙, 2007 참조)
  - 현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시설이용 보조가 높아 이들의 과다수요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일정소득 이하 다자녀 가구의 영아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보조금을 받는다면 재정절감과 육아지원의 다양화라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음.

〈표 10〉 영유아 연령별 육아서비스시설 이용률

(단위: %)

연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2004	4.9	16.4	41.1	75.0	91.1	98.8
2007	14.8	35.0	57.4	81.2	92.7	98.7

주: 육아서비스시설은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등 모든 기관을 포함함.

자료: 서문희 외 (2005), 'KDI가구 실태조사'에서 저자 계산

□ 수요자 중심의 보육비 지원을 통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해야 함.

○ 현재 시설에 직접 지급되는 보조금을 바우처(voucher)나 세액공제(tax credits)를 통해 수요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수요자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음.

- 수요자의 입장에서 화폐착각(money illusion)이 존재하므로 시설에 월 30만원을 지불하는 경우보다, 월 60만원을 지불하고 30만원을 환급받는 경우에 수요자로서의 권리와 정부의 보조에 대해 강하게 인식할 수 있음.

□ 바우처 도입에 따른 장점은 유연한 제도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수요자의 특성(가구소득, 모의 근로여부, 자녀 수 등)을 반영하거나 시설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차등지원하여 앞에서 제시한 필수 수요자와 선택적 수요자의 구분을 용이하게 해야함.

○ 일률적으로 표준보육료를 보조금 지급의 기준액으로 하기보다 지역의 가격차를 반영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통해 재정절감을 이룰 수 있음.

- 예를 들어 아동 연령별, 지역별 시장가격을 조사하고 시장가의

80 percentile과 표준보육비용 중 낮은 금액을 기준액으로 설정하여 가격이 낮은 지역의 보조금 액수는 줄이는 방안도 고려할 만함.<sup>6)</sup>

- 바우처를 이용한 보조금 환급에서 환급 시차를 이용하거나 자기 부담(copayment) 액수를 조정하여 재정절감을 위한 인센티브를 설계할 수 있음.

□ 육아지원정책을 시행하는 부처는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부, 농수산식품부, 노동부 등으로 아동발달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수단의 선택을 위해 긴밀한 부처간 협의가 필요함.

- 부처별로 육아지원의 목표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부처간 협의를 통해 영유아 보육료 · 교육료 지원 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범위와 대상을 선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해야 함.

- 보건복지가족부가 도입을 계획하는 전자바우처와 관련하여, 지원을 및 인프라 구축 등 부처 간 협조 필요
- 노동부가 추구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목표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부가 주관하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의 시행 시 근로여성 혹은 맞벌이 가구에 추가지원을 고려할 수 있음.

---

6) 실제로 미국의 각 주는 지역마다 다른 보조금 지급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시장가의 일정분위를 기준금액으로 보조율을 정하거나, 가구소득의 일정비율만큼을 보조해주는 등 여러 방법이 사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Blau (2003)을 참조하라.

## 7. 요약 및 결론

-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늘고 육아서비스 시설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육아서비스 관련 정책의 중요성 증대
  - 상당수의 아동이 육아서비스 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육아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필요
  - 영유아기 아동 발달의 균등기회 부여를 위한 육아지원정책의 지원체계 개선 필요
- 현재의 정책은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이나 제도 설계로 인해 육아서비스 공급자 감독 및 수요자 지원에 있어 미흡
  - 영유아 보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부처간 합의 통로와 일원화된 감독체계의 부재로 인해 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노출되고 있음.
  -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나 규제를 보완하기 위한 보조금 제공으로 인해, 질적 향상을 위한 민간의 창의적 노력이 제한됨.
  - 정책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보조금제도로 인해, 취업모(母)는 보조금 혜택 시설 이용자의 절반도 안 되고, 저소득층의 시설이용률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낮음.
- 육아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육아지원 목표를 단순화하고, 차등적 지원, 지원방식의 다양화, 대상서비스의 확대, 수요자를 통한 지원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육아지원의 목표를 아동 발달의 균등한 기회확보 또는 부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으로 단순화하고,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한 차등적 지원이 필요함.

- 취약계층에게 육아비용 지원, 국공립시설을 통한 육아서비스 우선권 부여 및 육아관련 정보 지원 등 적극적으로 지원
- 시설이용률이 낮은 영아의 경우 차등적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반면 시설이용자 중 취약계층과 중산층 근로여성 등 육아서비스 필수 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상대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 12〉 육아서비스부문 선진화방안 및 육아지원정책 개선방안 요약

---

육아서비스부문 선진화방안

---

1 육아서비스의 질과 가격 개선을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명목적인 비영리규제에 대한 제고

[선결조건]: 세제 혹은 가격상한 등 각종 제도가 영리허용 여부와 일관되도록 정비될 필요

---

육아지원정책 개선방안

---

1. 적절한 정책목표 수립

- 육아지원의 정책방향은 아동발달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과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것
- 출산장려, 양육비 절감, 육아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은 육아지원의 기대효과로서 제도의 설계에 따라 강조될 수 있기도 하나 정책목표로 인식하기는 어려움

2. 육아지원 대상 및 범위 설정

- 취약계층-빈곤계층, 장애인 가구, 저소득층(특히 맞벌이), 입양아동 가구, 다문화 가구, 편부모, 결손가정 등-에 대한 보호 강화: 국공립시설 기능쇄신, 가구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 적극적 정보제공 및 교육
-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계층을 무조건 확대하기보다 취약계층의 탈빈곤 제도와 연계하여 지원강화

3. 육아지원 재정 효율화

1) 정책 우선순위 설정: 필수 수요자 및 선택적 수요자 차등지원

- 아동발달의 균등한 기회제공 측면에서 필수수요자는 취약계층 아동
-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측면에서 필수수요자는 맞벌이(근로여성) 가구
- 따라서 취약계층과 중산층 맞벌이(근로여성) 가구 우선지원, 근로여부 혹은 이용시간(반일/종일)에 따른 차등지원 등을 고려

2) 바우처 활용방안

- 바우처 도입을 통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
- 보조금 기준액 설정: 가격상한선 혹은 표준보육비용을 일률적 기준액으로 하기보다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방안 마련
- 보조금 지급방법: 바우처 환급 시차를 이용하거나 본인부담액(copayment)조절 등을 통해 재정절감 인센티브 부여

3) 부처 간 협조

- 전자바우처에 대해, 지원율·인프라 구축 등에 부처간 협조 필요
  -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시행 시 노동부가 강조하는 근로여성 지원방안 반영
-

## 참 고 문 헌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0』, 2006.
- 김현숙, '형평성 제고를 위한 육아지원 방안,'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회재정분야 종합보고서』, 기획예산처, 2007.
- 나정·서문희, 『영·유아교육과 보육』, 인구고령화와 교육·인력개발, 이삼호 편, 한국개발연구원, 2005.
- 서문희 외,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여성부, 2005.
- 여성가족부,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 『새싹플랜』, 2006.
- 조병구·조운영 외, 『기본보조금지원사업』, 재정사업 심층평가, 한국개발연구원, 2007.
- 조병구·조운영·김정호, 『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 및 지원효과 분석』, 연구보고서 2007-02, 한국개발연구원, 2007.
- Blau, David, "Child Care Subsidy Programs," *Means-Tested Transfer Programs in the U.S.*, Robert Moffitt(E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for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03.
- Heckman, James, "Policies to Foster Human Capital," *Research in Economics*, 54(1), pp.3-56, 2000.
- OECD, OECD Country Not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n the Republic of Korea, OECD Publishing, 2004.
- OECD, Starting Strong II, OECD Publishing, 2006.
- OECD, Babies and Bosses -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A Synthesis of Findings for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2007.

##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작업반

KDI	: 윤희숙 연구위원 : 문형표 선임연구위원 : 조윤영 연구위원 : 김정호 연구위원
경기대학교	: 박능후 교수
서울대학교	: 권순만 교수
서울대학교	: 이봉주 교수
한국경제연구원	: 이주선 기업연구본부장
한국조세연구원	: 김재진 연구위원
기획재정부	: 사회예산심의관 : 복지예산과장
교육과학기술부	: 유아교육지원과장
보건복지가족부	: 재정운영팀장 : 보험약제과장 : 사회서비스정책과장 : 보육재정과장 : 연금정책팀장 : 기초노령연금TF1팀장